

□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(안) 비교표

현행	개정안
<p>2. 처방·사용 대상</p> <p>■ 식욕억제제는 아래와 같이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한다.</p> <p>○ 한국인(만19세 이상)의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BMI(Body Mass Index) $25\text{kg}/\text{m}^2$을 기준*으로 식욕억제제는 BMI $25\text{kg}/\text{m}^2$ 이상(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 존재 시 BMI $23\text{kg}/\text{m}^2$ 이상) 환자의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*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(2018~2022) (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합동, 2018.7월)</p> <p>- 참고로, 국내 허가사항은 BMI가 $30\text{kg}/\text{m}^2$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$27\text{kg}/\text{m}^2$ 이상에서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. (* 허가 시 미국인 비만기준(BMI $30\text{kg}/\text{m}^2$)으로 심사)</p>	<p>2. 처방·사용 대상</p> <p>■ ----- -----.</p> <p>○ (허가사항 ‘효능효과’) 적절한 체중감량요법(식이요법 및/또는 운동요법)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(Body Mass Index : BMI)가 $30\text{kg}/\text{m}^2$ 이상, 또는 다른 위험인자(예: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)가 있는 BMI $27\text{kg}/\text{m}^2$ 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에서 운동,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한다.</p> <p>- 참고로,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비만학회의 ‘비만진료지침(2018)’에서는 ① 체질량지수 BMI $25\text{kg}/\text{m}^2$ 이상인 환자에서 비약물치료로 체중감량에 실패한 경우에 약물치료를 고려하고, ② 약물치료 시 반드시 비만의 기본 치료(식사 치료, 운동치료, 행동 치료)와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, 약물치료의 득실을 비교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학적 감시 하에서 신중하게 사용한다.</p>